

# 2026년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

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직원의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「2026년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2월 9일  
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

## 1. 사업개요

### □ 사업목적

- 일·생활 균형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\*에 대한 지원 강화로 청년 인구 유입 및 출산을 제고 도모

\*일·생활 균형(위라벨)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 +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운영기업

### □ 모집규모 : 25개사 내외(자부담 총 사업비10% 이상, VAT제외)

※ 인구감소지역(33%, 총 지원규모 10개사 내외), 일반지역 구분 선정(67%)

### □ 사업기간 : 선정일 ~ 2026. 11. 30.

### □ 지원대상 : 충청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\*(성평등가족부 인증)

\*인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에 한함(가족친화인증기업 확인 : 가족친화지원사업 [www.ffsb.kr](http://www.ffsb.kr))

※ 25년도 기수혜기업 재신청 1년 유예(신청 제한)

### □ 지원내용

- 총 지원한도(기업당 최대 15,000천원) 내 바우처 형식의 수요자 맞춤형(패키지) 지원
  - 바우처 사업 : 사업화 5종, 마케팅 3종, 사업기획 2종, 시설 현대화 1종 중 지원분야별 한도(바우처 사업내역 참조) 내에서 자율편성하여 사업계획서 제출

### □ 평가기준 및 업체선정

- 평가기준 : 평가기준표(별첨)에 의한 평가
  - 정량평가(50) : 지역경제 기여도 및 기업 건설도 \*내부평가
  - 정성평가(50) : 사업 필요성 및 역량 \*외부평가(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운영)

### ○ 업체선정 : 고득점 순 선정(내·외부 평가점수 합산)

\*동점자 처리기준 : (1순위) 가족친화인증 유지기간이 오래된 순

(2순위) 정성평가 항목 내 지원사업 필요성 분야 고득점 순

## 2. 바우처 사업내역(지원내용)

○ 지원한도 내 바우처 형식의 수요자 맞춤형(패키지) 지원

(단위 : 천원)

지원분야	세부 프로그램	주요 내용	한도 (공급가액)
사업화	시제품 제작	시제품 설계·제작 지원	10,000
	제품·포장 개발	제품·포장 디자인 개발	
	국내외 인증	규격인증 및 국제표준 경영시스템인증 획득에 필요한 컨설팅, 시험·분석	
	특허 및 지재산권	특허, 브랜드 등 출원 및 침해 대응	
	기술 컨설팅	보유기술 경제성 로드맵, 기술경영 컨설팅 등	
마케팅	온오프라인 마케팅	유튜브, TV 홈쇼핑 등 활용 마케팅	10,000
	국내외전시회 참가	국내·외 박람회 직접 참가 시 부스비 지원	
	기업·제품 홍보	CI 및 홈페이지 리뉴얼, 제품·회사 카달로그 제작	
사업기획	공모사업 기획 컨설팅	중앙부처 공모사업 기획,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청 지원	5,000
	경영전략 수립 컨설팅	기업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 컨설팅	
시설 현대화	제조시설 설치	제품 가공·선별시설, 포장 기계 등 설치	15,000

\*총 지원한도(기업당 15,000천원) 내에서 자율편성하여 사업계획서 작성·제출

\*신청금액 제외 대상 : 부가가치세, 지원한도 초과분 제외

## 3. 추진일정



## 4.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.9(월) ~ 2. 27(금) 18:00까지
-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제출 ※우편제출은 18:00 도착분에 한함
- 접수처 : 충청북도기업진흥원(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기업지원부)
- 제출서류 < 아래 순번대로 취합.제출 >

순번	제출서류
1	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5부(원본 1부, 사본 4부) (서식1)
2	정보활용 동의서(서식2), 개인정보 수집,이용,제3자 제공 동의서(서식3), 의무이행 동의서(서식4)
3	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4	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, 공장등록증, 가족친화기업 인증서(최초, 재인증 전부 포함) 각 1부
5	결산 재무제표(최근 2년 (23' ~24' )),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(최근 3개월) 각 1부
6	유망중소기업 인정 및 품질인증서(기업부설연구소, 이노비즈, 메인비즈, 벤처기업, 녹색인증기업, ISO인증)
7	프로그램 지원금 산출 내역 근거자료(세부 견적서, 계약서 등)
8	가점증빙서류(여성기업확인서, 장애인기업확인서, 소기업 확인서) ※ 해당시 제출

\* 상기 제출서류 외, 평가를 위해 추가자료 요청 가능

## 5. 사업계획 변경 및 결과보고

※ 선정기업만 해당

- 사업계획 변경 : 사업수행 중 프로그램 내용 및 공급기관 변경이 불가피하여 계획서 수정이 필요할 경우 진흥원과 사전협의 후 변경신청 가능 <서식 별도 안내>
- 결과보고 : 소정양식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(제출일 별도 안내)
  - 제출서식(서식5) : 결과보고 및 지급신청서 등 1부

## 6. 유의사항

### □ 시설현대화 지원분야 선정기업 의무사항

-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(재산 처분의 제한)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3조(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)에 의거, 해당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은 5년간 관리 대상으로 아래사항 준수 필수
  - 목적 외 용도 사용, 양도, 교환(대여), 담보의 제공 등 금지
  - 상기 사항 미 준수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가능
    - \*5년간 사후관리(매년 1~2회 취득한 자산의 사용실태 현장점검 등) 적극 이행
-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수행중 또는 사업완료(자산 취득 등) 이후에도 충북지역 외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, 회수 등의 조치를 받으실 수 있음

## □ 사업 선정기업 의무사항

-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은 본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사업의 진행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업 수행기관(진흥원)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  - 사업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요구하는 필요서류 제출, 정기적인 모니터링 (서면조사, 현장점검 등), 기타 현황보고 등
- 사업추진 중 당초 신청·결정사항과 다르게 사업내용, 공급기관 변경이 필요할 경우, 반드시 사업 수행기관(진흥원)과 사전협의·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. \*임의변경 및 추진 시 지원금 지원 제한
- 지원결정사항(업체명, 대표자, 소재지, 휴·폐업, 법인합병,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등) 변경이 발생될 경우, 즉시 사업 수행기관(진흥원)에 신고하여야 하며, 휴·폐업, 법인 합병, 개인기업의 법인전환(포괄양도양수 등) 등의 경우에는 지원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\*신고방법, 제출서류 등 별도 안내

## □ 지원금 지급

- 지급방법 :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지급 신청서(집행내역 포함) 징구 후 지급
  - 당초 사업계획 및 지원결정 사항 대비 100% 이행시 지급
  - 최종 사업비 집행내역(입금증, 세금계산서 등 증빙 포함) 필수 제출

## □ 기타사항

- 사업 신청 후 서류 보완(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, 평일기준)이 되지 않거나, 신청서(첨부서류 포함) 내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(평가 제외 등)을 받으실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신청서 접수결과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예비합격제 운영 :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의 중도 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 발생 시 별도의 재공고(모집) 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선정·지원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신청 제한 :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기업,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,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 □ 사업문의 :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

- 담당자 : 유수형 대리(043-230-9752)

**별첨1**

**평가기준**

구분	지표명	배점	평가내용	
<b>총점</b>		<b>110</b>		
정량평가	지역 경제 기여도 및 기업 건실도 (50)	가족친화인증 유지기간	10	재인증(3회 이상) 10점, 기간연장(2회) 8점, 신규인증(1회) 6점
		매출액 증가율	10	15% 이상 10점, 10% 이상 8점, 10% 미만 6점
		자기자본비율 (직전년도)	10	50% 이상 10점, 30% 이상 8점, 30% 미만 6점 (*자본총계 ÷ 자산총계)
		고용인원 (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준)	5	30인 이상 5점, 10인 이상 4점, 10인 미만 3점
		산업재산권 보유 (특허, 실용신안권)	5	1건 등록 3점, 2건 등록 4점, 3건 이상 등록 5점
		유망중소기업 및 품질인증취득	10	기업부설연구소, 이노비즈, 메인비즈, 벤처기업, 녹색인증기업, ISO관련 인증(최대 2개) ※ 인증당 3점, 최대 10점
정성평가	사업 필요성 및 역량 (50)	지원사업 필요성	20	지원사업(바우처) 신청배경 및 필요성
		사업비 적정성 및 사업 효과성	15	사업비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과성
		사업수행 역량 및 사후관리 적정성	15	신청사 사업수행역량, 사업종료 후 활용방안, 관리체계의 적절성
기 타	가점 (10)	가점사항	5	여성기업, 장애인 기업, 소기업 ※ 해당 시 최대 5점
			5	- 본 사업 신규 신청 기업 *신규 신청 기업(과거 신청 후 미선정 기업 포함)

※ 신청제한 : 25년도 지원기업(재신청 유예기간 1년 적용)